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7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11
제 안 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건축법시행령 제127조 제3항, 안산시건축조례 제14조, 같은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미술 장식품 설치내용이 개정 삭제
- '95. 12.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내지 제11조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내지 제25조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내용이 신설되고, 시.군 조례에도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제정 함.

□ 주요골자

-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: 공동주택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위락 시설 제2조
-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: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 제4조
-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: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 건축물(1000분의5)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(1000분의1) 제5조
-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 제6조 내지 제8조
-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회의, 의결, 위원해촉, 간사 및 서기에 관한 내용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

□ 제정 조례안 : 복 임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서 : 복 임
- 예산사항 : 심사위원 참석수당(공무원이 아닌자)
 - 50,000원 × 8명 × 5회 = 2,000천원
- 인근시군 관련조례 : 복 임
-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표준안 : 복 임
- 입법예고 반영사항 : 해당사항 없음.(입법예고기간: '98. 10. 8 ~ 10. 27)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(이하 "법"이라한다)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)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, 전시장등의 문화예술 공간이 설치권장 되어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.

1. 공동주택
2. 업무시설
3. 숙박시설
4. 판매시설
5. 위락시설

제 3조 (미술장식의 설치)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미술 장식을 설치해야 할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조 (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)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

제 5조 (미술 장식품의 건축비용 비율) 법 제1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1000분의 5
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: 1000분의 1

제 6조 (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)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 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 위원회를 둔다.

제 7조 (기 능) ①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작품의 예술성
2. 작품의 환경과 조화성
3. 작품의 공공성
4.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
5.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

②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 8조 (구 성) ①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안산시 기획실장 및 건축물 미술 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, 기타위원의 경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9조 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0조 (회 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.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예술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3조(수당및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

건축개요	위 치					
	건축 주	성명 : 주소 :				
	대지면적		건축면적		연 면 적	
	총 수		최고높이		구 조	
	용 도		외장재료		건축종별	
	허가일자		사용검사 예 정 일		총 공사비	
건축 주 소						
설계자 사무소 명						
미술 품 개 요	작가 명	작 품 명		작 품 가 액		
	전화 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
	작가 명	작 품 명		작 품 가 액		
	전화 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
	작가 명	작 품 명		작 품 가 액		
	전화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
	총 설치대수	조각 점, 회화 점, 기타 점, 계 점				
총 가 액	설치예정일					

위와같이 신청 합니다.

19

신청인

(인)

안산시장 귀하

- 첨부서류 1.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2부.
 2. 작가경력서 사본 1부.
 3.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12부

*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.

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

법 제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법 제11조 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군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.

영 제23조 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) 법 제9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”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영 제24조 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연면적(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1만제곱미터(중축의 경우에는 중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)이상인 건축물로 한다.

1. 균린생활시설
2. 의료시설중 병원
3. 업무시설
4. 숙박시설
5. 판매시설
6. 위탁시설
7.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
8. 운수시설중 철도역사
9. 방송·통신시설

② 법 제11조 본문에서 "건축"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.

③ 법 제11조 본문에서 "건축비용"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

④ 법 제11조 본문에서 "미술장식"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등 조형예술물
2. 벽화·분수대·상징탑등 환경조형물

⑤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미술장식의 가격을公正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
2.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영 제25조 (시 ·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(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) ·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: 1,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: 1,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71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8. 12. 22.
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노영호 외 6인

1. 수 정 이 유

- 미술장식품의 건축 비용비율을 최소화하는 조항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조정하고
- 안산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작품의 예술성을 작품의 예술성 및 가격의 적정성으로 변경하고
-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의 내용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

2. 주 요 골 자

- 안 제5조(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 비율) 제1항중 “1000분의5”를 “1000분의5이상”으로, 제2항중 “1000분의1”을 “1000분의1 이상”으로 수정하고
- 안 제6조(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) 중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로 수정하고
- 제10조(회의) 제2항중 “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”를 “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”로 수정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 제1호 중 “1000분의5”를 “1000분의5 이상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1000분의1”을 “1000분의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”를 “안산시미술장
식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 한다.

제7조 제1항중 “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
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작품의 예술성 및 가격의 적정성

동조 제2항중 “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 제2항중 “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
한다”를 “의결한다”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5조 (미술장식품의건축비용비율) (생략)	제5조 (미술장식품의건축비용비율) (원안과 같음)
1.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<u>1000분의 5</u> 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: <u>1000분의 1</u>	1..... : <u>1000분의 5 이상</u> 2..... : <u>1000분의 1이상</u>
제6조 (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)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<u>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</u> 둔다.	제6조 (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) <u>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</u> 둔다
제7조 (기능) ① <u>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</u> 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작품의 예술성 2~5(생략) ② <u>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</u> 는 작품의 예술성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	제7조 (기능) ① <u>위원회</u> 1. 작품의 예술성 및 가격의 적정성 2~5(원안과 같음) ② <u>위원회</u>
제8조 (구성) ① <u>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</u> 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8조 (구성) ① <u>위원회</u>

원 안	수 정 안
<p>②~③(생략)</p> <p>제10조 (회의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</p>	<p>②~③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 (회의)</p> <p>①(원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<u>의결한다.</u></p>